

I. 목회관계해소와 임시목회관계

1. 한 교회 목사의 사임과 청빙은 규례서에 따라 (G-2.08, G-2.09) 모든 과정을 목회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그 지도에 따라야 한다.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는 노회 자체의 결의에 의해 노회 회원권을 가지며, 어떤 목회관계도 노회의 승인 없이 수립되거나 변경되거나 해소될 수 없다.” (G-2.0502)

2. 목회 관계 해소 (Dissolution of Pastoral Relationship)

(1) 목사의 자의에 의한 사임: 사임하는 목사가 사임서를 노회로 제출하면 (사본은 당회에 제출), 목회위원회는 목사 및 당회와 사임의 이유와 상황을 검토한다. 사임을 위한 교회의 공동의회와 노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2) 교회의 요청에 의한 관계해소: 활동교인 ¼의 서면 요청이 있을 경우 당회는 제일 먼저 목회위원회에 목사와의 관계해소를 요청한다는 통보를 해야 하며 목회위원회는 당회와 목사에 대한 면담 등의 절차를 통해 중재한 후, 임시 공동의회를 개최하게 된다.

*목사는 교회 소속이 아니라 노회원이므로, 그 목회관계의 해소는 그 교회의 공동의회 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노회의 결의로 확정된다. 목회위원회는 공동의회 결과, 반대의견, 노회의 선교정책 등을 참조하여 목회관계해소 가부를 노회에 추천한다.

4. 사임직후 목회관계 정리단계와 목사에 대한 교회의 배려사항

- (1) 목사의 목회관계해소가 기정사실이 되면, 당회는 목회위원회와 연락하여 그 목사의 ‘목회관계해소’를 위한 공동의회 날짜를 정하며, 목사의 마지막 설교 혹은 송별 시간 등 목회관계 정리를 위한 시간적 배려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 (2) 혹시 사택에 거주한다면, 이사가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허락하며, 교회차량을 목회에 사용하고 있었다면 차량에 대한 처리, 또는 목회관계 연수를 고려한 전별금/퇴직금 등에 대해서도 배려해야 한다.

5. 목사 사임 후, 임시목회관계 수립

- (1) 목회위원회는 그 교회 당회의 형편과 요청을 고려하여 임시목회관계를 수립하여 노회에 보고한다. 임시목회관계는 아래와 같다. (당회가 없는 교회의 경우, 행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보고한다.) 모든 임시목회 관계는 어떤 경우에도 차기 담임목사 청빙에 관여하지 못하며, 임시담임목사(interim Pastor)는 원칙적으로 차기 담임목사가 될 수 없다.

* 임시당회장(Interim Moderator)

임시당회장은 단순히 교회 행정을 당회와 함께 주관하고, 강단의 공석이 생기지 않도록 설교자를 선임해야 한다. 이 때 설교자는 설교목사(Pulpit Supply)이며 설교목사는 여하한 경우에도 예배 이외의 목회와 행정에 참여할 수 없다. 1 개월 이상 동일한 설교자가 설교할 경우에는 반드시 목회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임시담임목사(Interim Pastor)

차기 담임목사를 청빙하는 기간동안 (심방, 경조사 등) 목회적 공백을 피하기 위해 목회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임시담임목사 선할 수 있다. 당회는 임시담임목사에게 사례, 차량, 및 연금 보험 등을 제공한다.

II. 교회 목회/선교 연구보고서 (Mission Study / Church Information Form)

1. 담임목사의 관계해소 결의 후, 당회는 목회/선교 연구 및 교회 보고서 (MS / CIF) 를 적성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당회는 목회/선교 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업무를 맡길 수 있다.
2. 목회위원회는 그 교회가 목회/선교 연구보고서를 작성한 지 5년 미만이거나 교회 사정의 부득이한 경우 연구보고서의 일부, 혹은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3. 이 연구보고서는 아래 사항들에 대하여 성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당회의 인준을 거친 후 (교인들에게 공개하는 동시에) 목회위원회에 제출한다.
 - (a) 교회의 지난 역사와 현재 교회 및 성도의 전반적인 상황
 - (b) 지역사회의 현황, 교회의 변화, 이에 따른 선교방향과 성도들이 바라는 교회의 미래
 - (c) 성도가 바라는 차기 담임목사에 대한 희망사항과 자질, 직책향후 청빙위원회는 담임목사 청빙에 있어 이 연구보고서에 근거하여야 한다.

III. 청빙위원회 구성과 청빙과정 (5 STEPS)

1 단계

1. 목회위원회의 허락에 따라, 당회는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적절한 수의 목사 청빙위원회를 구성한다. 청빙위원회는 당회의 대표를 포함하여 교회의 전 교인을 대표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2. 청빙위원회는 교회 목회/선교 연구보고서의 범위 안에서 목사 청빙에 관한 독자적인 권한을 가진다. 단, 청빙과정 및 모든 목사 후보자(들)에 대한 신상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지켜야 하며, 청빙 지원서 및 첨부자료를 받았을 때, 접수되었음을 알려주어야 하며 탈락된 후보가 있을 경우에도 정중하게 공지해주도록 해야 한다.
3. 청빙위원회는 구성된 즉시 **노회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필요할 경우, 목회위원회는 청빙위원회의 지도를 위해 자문위원을 파견할 수 있으며, 모든 청빙의 과정은 반드시 목회위원회에 사전지도를 거쳐야 한다.

2 단계

4. 목사의 청빙은 원칙적으로 **신문/방송의 공개광고를 통하여** 진행해야 한다. (광고내용은 반드시 목회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그 후보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개별 추천과 노회에 추천을 요청하여 추가할 수 있다. 여하한 경우에도 **절차의 공정성**이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

(*) 만약, 청빙위원회가 비공개 방식으로 진행하기를 원하거나 1인 후보를 지정하여 청빙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목회위원회에 그 타당한 이유를 사전에 알리고 면담을 거쳐 승인을 얻어야 한다. 타당한 이유가 제시되지 않는다면 청빙이 승인되지 않을 수 있다.

5. 규례서 G-2.0504 a 항에 따라, 개 교회의 목사 청빙은 무기한 목회관계와 지정된 기간의 목회관계로 수립할 수 있다. 단, 지정된 기간의 목회관계는 최소 6년 이상이 되어야 하며, 한 번 지정된 기간이 지난 후, 불가피한 이유없이 무기한 목회관계가 아닌 지정된 기간으로 또 다시 청빙할 수 없다.

3 단계

6. 어떤 방법으로 후보자를 선정하든지 간에, 청빙위원회는 최종 후보자를 마지막으로 선정하기에 앞서 소수 인원의 후보자들을 선정하여 목회위원회에 보고하고, 목회위원회는 그 후보자들의 신학교/교단 배경 등 노회 가입 적격여부를 검토한다.

4 단계

7. 심각한 문제성이 발견되지 않을 때 청빙위원회는 검증이 완료된 후보자들을 상대로 인터뷰 등 최종 후보자의 선정을 진행할 수 있다. (*여하한 후보자의 설교초청은 반드시 목회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5 단계

8. 최종 후보자가 결정되면,

- (1) 그는 (그녀는) 노회가 정한 양식에 따라 노회 가입신청서와 신앙고백서 및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한다.
- (2) 청빙위원회는 당회에 요청하여 사례와 모든 혜택에 관한 '청빙약정서' (Terms of Call)를 작성한다.

10. 목회위원회는 청빙위원회와 후보자를 면담하고, 그 교회와의 목회관계 수립과 사례 및 모든 혜택이 적절한 지 최종 검토한 후, 공동의회 개회를 하도록 한다.

타 교단의 목사일 경우 일정기간 동안 멘토(mentor)를 선임할 수 있으며, 목회 경력과 교단 배경에 따라 1-3 과목의 목사고시 통과를 요구할 수 있다.

IV. 목회관계 수립

1. 목사 청빙의 최종 결정은 노회의 승인으로 완료된다. 노회의 청빙승인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청빙된 목사가 교회에 부임하거나 목회를 시작할 수 없다.
2. 노회는 목사의 위임 (과 안수) 를 위한 행정위원회 (AC; Administrative Commission)를 구성하며 목사의 위임예식은 행정위원회가 주관한다.
2. 규례서 G-2.0805 에 따라, 모든 청빙절차는 위임예식을 통하여 완료되면, 이로써 목회관계가 수립된다.

[참고: 청빙위원회 첫 진행을 위한 Checklist]

목사의 청빙은 노회의 결정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항상 목회위원회와 긴밀히 연락하여 그 절차에 관한 허락과 자문을 구해야 한다. '허락과 자문'은 한 교회의 목사 청빙을 통제하거나 노회의 의도대로 목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단의 기준에 적합한 목사를 선임하는 과정에 마찰을 피하고, 교회와 노회사이의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1. 청빙위원회 구성

목사청빙위원회는 대체로 목회위원회가 임시당회장이 파송하는 것과 동시에 구성할 수 있다. (특별한 경우에는 별도로 목회위원회의 허락을 기다려야 한다.) 당회는 청빙위원회 구성이 모든 교인을 대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청빙위원회 구성의 최종 권한은 공동의회에 있으며, 공동의회의 가결로 구성된 청빙위원회는 독립적으로 활동한다.

2. 청빙위원회 첫 진행

(1) 서기선정

청빙위원장은 처음 소집하고 기도로 시작된 위원회 공식회의에서 제일 먼저 서기를 선정해야 한다. 서기는 청빙의 과정을 자세히 기록할 뿐만 아니라, 그 기록을 목회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2) 비밀엄수 서약

청빙위원장은 목사의 청빙에 관하여 모든 위원들이 비밀엄수를 서약하도록 해야 한다. 어떤 목사가 지원했는지, 어떤 목사가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모든 인적사항에 대하여 함구하여야 한다. 이것은 목사 개인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또한 교회 내 발생할 수 있는 의견대립을 사전에 예방하는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이 비밀엄수 서약은 따로 서약서를 만들어 서명할 수도 있고, 간단히 서기록에 모든 위원이 서명할 수도 있다.

(3) 사전 결정사항들

본격적으로 청빙광고를 공포하기 전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교회 내 성도들에게 '바람직한 목회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목사의 연령, 학력, 목회성향 등을 물을 수 있다.) 이런 설문조사는 향후 지원한 목사에 대하여 평가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된다.
2. 청빙광고에 포함할 내용 / 제출요구할 서류와 기본적인 자격요건 설정
3. 우편접수만 할 것인가. 이메일도 포함할 것인가.

(4) 제출된 서류 관리

정해진 마감시간 내에 접수된 서류를 개봉할 때는 위원장과 서기의 동시 입회로 개봉하며, 반드시 복사를 만들어 놓은 후 위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때, 경우에 따라서는, 지원하는 목사의 이름은 가려놓고 번호로만 열람할 수도 있다.

(5) 예상되는 Timeline 설정

위의 사항들을 결정하였으면, 청빙을 완료할 때까지 시간적인 순서와 일정을 예상하여 정해놓을 수 있다.

특히 제출서류 마감일자가 중요하며, 정기노회 일자를 파악하여 일정을 정하여 진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정기노회 일자: 3 월, 6 월, 9 월, 12 월, 첫 번 화요일)

3. 청빙과정 중 노회/교회와의 관계

청빙위원회는 독자적인 기관이기는 하지만, 항상 그 진행과정을 당회 혹은 성도들에게 일정 부분 공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회자 신상 공개는 절대 금지). 또한, 목회위원회와의 긴밀한 소통이 불협화음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미국장로교 BOOK of ORDER 에서 발췌한 내용

제 2 장 직제사역, 위임, 공인

(ORDERED MINISTRY, COMMISSIONING, AND CERTIFICATION)

G-2.08 청빙과 위임

G-2.0801 목사 공석

개체교회의 목사직이 공석이거나 노회가 현존하는 목회관계 해소의 발효일을 승인한 다음에, 개체교회는 노회의 지도와 승낙을 받아서 다음의 방법으로 그 공석을 채우는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G-2.0802 목사 청빙위원회 선출

당회는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전체 개체교회를 대표하는 목사 청빙위원회를 선출해야 한다. 그 위원회의 임무는 회중이 선출할 목사 한 명을 공천하는 일이다.

G-2.0803 청빙 절차

노회의 절차에 따라서 그리고 공동의회에 보고하기 전에, 목사청빙위원회는 청빙 고려 대상자들의 장점과 적합성과 청빙 수락 가능성에 대해 노회의 자문을 받고 이를 숙고해야 한다. 그 위원회는 회중에게 보고할 방향이 분명해졌을 때, 당회에 통보해야 하며, 당회는 공동의회를 소집해야 한다.

G-2.0804 청빙 조건

청빙 조건은 항상 청빙 시점에 시행되고 있는 노회의 최소 요구사항을 충족하거나 능가해야 한다. 당회는 목사의 청빙 조건을 매년 검토해야 하고 당회가 적절하다고 간주하면, 그 변경안이 노회의 최소 요구사항을 충족한다는 조건하에, 그 제안을 공동의회 결의 (G-1.0501)에 부쳐야 한다. 청빙은 연금과 의료 혜택이나 총회가 승인한 추가 플랜이 포함된 미국장로교 혜택제도의 가입을 포함해야 한다.

G-2.0805 위임 예식

개체교회와 노회와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또는 후보생)가 모두 영구적 목사직이나 임명 목사직의 청빙에 동의하였을 때, 노회는 위임 예식을 준비하고 거행함으로써 청빙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위임은 목회관계를 수립하는 노회의 행위이다. 위임 예식은 예배의 맥락에서 이루어진다. 예배모범 (W-4.04)에 있는 예식의 순서를 따라야 한다.